

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 (제95조제2항제1호 관련)

1.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

구 분		기 준 면 적
특 별 시		127,402㎡
광 역 시	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	68,333㎡
	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	52,784㎡
	인구 200만명 미만	37,563㎡
특별자치시		35,383㎡
도	경기도	77,633㎡
	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	44,974㎡
	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	43,376㎡
	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	39,089㎡
특별자치도		32,223㎡

2. 시,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

구 분			기 준 면 적
시	인구 10만명 미만		11,893㎡
	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		13,965㎡
	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		17,759㎡
	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	18,907㎡
	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		19,098㎡
	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		20,214㎡
	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		21,968㎡
	인구 100만명 이상		22,319㎡
군	도의 군	인구 3만명 미만	7,525㎡
		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	8,385㎡
		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	9,406㎡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1,829㎡
		인구 15만명 이상	13,582㎡
	광역시의 군	인구 10만명 미만	11,861㎡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2,020㎡
		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14,061㎡
자 치 구	특별시의 자치구	인구 50만명 미만	26,368㎡
		인구 50만명 이상	27,484㎡
	광역시의 자치구	인구 10만명 미만	11,861㎡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2,020㎡
		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14,061㎡
		인구 50만명 이상	18,206㎡

비고

1.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.

가. 지하주차장·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

나. 도서관,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

다. 재난상황실,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

라.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·수익하는 면적

2.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